<중소기업고유업종> 43개 해제

중소기업 고유업종이 대폭 감축돼 명맥만 유지하게 됐다.
중소기업청(청장 한준호)은「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중 개정령이 2000년 8월2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8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상업용저울 등 43개 업종을 해제하고 거울제조업 등 2개업종은 일부범위만 해제한다.
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거나, 대기업 참여시 기술·품질수준을 높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, 참여 중소기업이 극소수로 독과점적 지위에 있거나 시장규모가 협소한 업종이다.

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지정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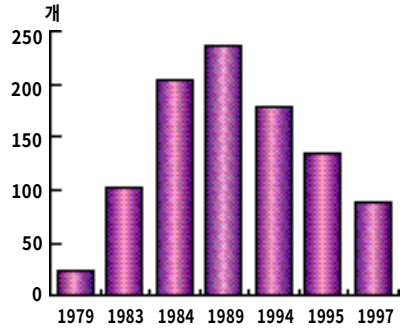

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고유업종 해제를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2001년 9월1일부터 해제할 방침이다.
해제되는 43개 업종은 금속공업 1개, 기계공업 6개, 조선공업 3개, 전자공업 5개, 전기공업 2개, 섬유공업 3개, 잡화공업 6개, 화학공업 4개, 요업제품 및 건설자재 3개, 농산물 가공 1개, 식료·의료분야 6개, 에너지·자원 관련분야 2개, 음반 및 녹음테이프 등이다. 잡화공업의 거울판제조업 중 거울제조업과 농산물 가공분야의 동물약품제조업 중 자체개발한 동물용의약품제조업도 해제된다.
화학공업 분야에서는 습강지(위생용 네프킨), 골판지, 크라프트지포대, EPS 및 판 제조업이 해제된다.
한편, 중소기업 고유업종 중 잔여업종은 45개로 금속공업 7개, 정밀화학 3개, 기계 5개, 섬유 4개, 잡화 5개, 화학공업 7개, 요업 및 건설자재 2개, 농산물 가공 3개, 식료 및 의료 4개, 에너지 및 자원 2개, 수산물 1개 등이다.
정밀화학에서는 생석회(생산능력 20만톤 이상의 자기소비용 제외), 탄산가스(액화탄산.고형탄산에 한하되 자가소비용 제외), 아연화제조업 등 3개, 화학공업에서는 골판지상자, 광택제, 재생타이어, 고무장갑, 플래스틱용기(PET용기 및 상자로 자가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150ml 이하의 드링크 요구르트용기 제외), PS(Polystyrene) Paper Sheet, 재생플래스틱원료 제조업 등 7개, 에너지·자원 관련분야에서는 전기절연유(1종 광유계에 한함), 기타 비윤활유(프로세스유) 제조업 등 2개이다.

<화학저널 2000/10/2>